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4. 30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9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- 가. 제안이유
 - 과학문화이용권 사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자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이용권 사용 범위에 동반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9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안 제9조(이용권의 사용 등)에서는 과학문화기관의 입장료 및 프로그램 비용을 과학문화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 대상을 “이용권을 발급받은 본인”에서 대상자의 “동반 가족”까지 확대함.

○ 검토 결과

- 이번 일부개정은 이용권을 발급받는 “대상자”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“동반 가족”까지 확대하여 과학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제고하고,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- 특히, 영등포구 내에는 과학교육 관련 기관이 없어 과학문화이용권의 사용처가 관외에 있는 것을 참고할 때,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. 따라서 일부개정을 통해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과학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.
- 또한, “과학문화이용권”은 포인트 충전식 카드로 1인 한도(취약계층: 5만 원, 일반학생: 3만 원)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에, 이번 개정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님.
- 다만, 과학문화기관 등 사용처에서 입장료를 무인 발급기로 결제하는 경우, 가족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이용권 발급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는 보호자를 단순히 “동반 가족”으로 한정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임. 따라서, 동 개정안의 “동반 가족”을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“보호자 또는 동반자” 등으로 범위를 넓혀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1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4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과학문화이용권 사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자 본인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이용권 사용 범위에 동반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육기본법」,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3. 7.~ 3. 27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이용권을 사용하여 구청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과학문화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프로그램을 이용”을 “과학문화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비용(동반 가족의 비용을 포함한다)으로 이용권을 사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이용권의 사용 등)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은 <u>이용권을 사용하여</u> <u>구청장이 지정한 국·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9조(이용권의 사용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<u>과학문화기관의 프로그램</u> <u>이용에 필요한 비용(동반 가족의 비용을 포함한다)으로 이</u> <u>용권을 사용</u>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